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 제2010 -173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중인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9-7호, ‘09.06.29.)”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1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표시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 “축산물의표시기준” 중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타법령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 “축산물의표시기준”에 관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현행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하여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 따른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기준 신설(안 제3조 4호 및 안 [별표1]2.가 및 나)
 - 표시 대상에 닭·오리의 식육과 식용란 중 닭의 알을 추가하고 세부표시사항을 정함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에 대한 사항 신설(안 [별표1]1.자.10))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의4.아항으로 정하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에 대한 조항 삭제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규정 신설
- 최소 판매단위 포장 내의 내포장 제품의 표시사항 신설 등(안 제5조 2호 및 3호)
 -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소 판매단위 내 내포장의 표시사항 신설 및 최소판매단위의 표시 생략가능 규정 신설
- 꼬리표 사용 등 표시기준 적용특례 대상 확대(안 제6조 1호)
 - 잉크, 소인표시가 어려운 경우의 표시방법을 꼬리표까지

확대하고 원료로 사용되는 축산물까지 적용 특례 대상 확대

□ 외국어 활자크기 규정삭제(안 제5조 4호)

- 외국어 병행 사용 시 활자크기를 한글보다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1]1.다.2))

- 모든 영업장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 대표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치즈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안 [별표1]1.아.1)가)

-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자연치즈, 가공치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카페인 함유 표시 신설(안 [별표1]1.자.11))

- 카페인 함량이 ml 당 0.15mg이상 함유 시 축산물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표시토록 함

□ 내용량 표시에 열량표시 추가(안 [별표1]1.바.4))

- 영양성분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내용량과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및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금지 조항 신설(안 제6조 및 7조)

- 표시기준 전반에 흩어져 있던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및 오인·혼동에 대한 조항을 본문으로 이동

수입축산물의 유통기한 표시방법 보완(안 [별표1]1.마.마))

- “연월”만 표시되어 수입되는 축산물 등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기준 신설

제조연월일 표시사항 보완(안 [별표1]1.라.3))

- 제조일자를 자율적으로 표시한 경우 지우거나 변조 금지 규정 신설

식육추출가공품의 가열처리방법 보완((안 [별표1]2.다.1))

- 멸균제품 표시 추가

표시사항의 표시주체 명확화(안 제4조)

- 기존 “영업자”에서 표시대상 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로 명확하게 함

제품명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1]1.가.3가))

- 원재료명·성분명의 제품명 사용 시 함량표시를 주표시면에 한정함

자사제품원료용 수입축산물의 특례조항 보완

- 자사제품원료용수입축산물 중 한글표시 생략 특례에서 제조일자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특례대상 제외(아이스크림류 제외)

※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고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 . .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 : 축산물안전과, 전화: 031-467-1968, 4388, 전송: 031-467-19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축산물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이고 원활한 가공 및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명”이라 함은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2. “축산물”이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3. “축산물가공품”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 제8호 및 제9호에서 정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4.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이라 함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명”이란 …………… …………… …………… 2. “축산물”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 …………… 3. “축산물가공품”이란 …… …………… …………… …………… 4.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이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p>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이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 한다)의 최소분류단위를 말한다.</p>	<p>.....</p>
<p>5.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으로 한다.</p>	<p>5. “제조연월일”이란 다만, 원료 제품의 포장을 제거한 후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원료제품의 포장 시점으로 한다.</p>
<p>6.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p>	<p>6. “유통기한”이란.....</p>
<p>7. “원재료”라 함은 축산물가공품의 가공에 사용되는 물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로서 최종제품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p>	<p>7. “원재료”란 축산물의 처리·제조·가공에</p>
<p>8. “성분”이라 함은 제품에 따로 첨가한 영양소 또는 비영양소</p>	<p>8. “성분”이란</p>

<p>이거나 <u>제품에 따로 첨가하지 아니한 축산물가공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요소를 말한다.</u></p>	<p>..... <u>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 물질로서 최종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u></p>
<p>9. “<u>영양소</u>”라 <u>함은</u> 축산물가공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발달·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u>결핍시</u> 특별한 생화학적·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p>	<p>9. “<u>영양소</u>”란<u>결핍 시</u></p>
<p>9의2. “<u>당류</u>”라 <u>함은</u> 축산물가공품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을 말한다.</p>	<p>10. “<u>당류</u>”란</p>
<p>9의3. “<u>트랜스지방</u>”이라 <u>함은</u> 트랜스구조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공액형의 모든 불포화지방을 말한다.</p>	<p>11. “<u>트랜스지방</u>”이란</p>
<p>10. “<u>1회제공량</u>”이라 <u>함은</u> 4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서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산출한 양을 말한다. 이 경우 1회 제공기준량은 [표 3]과 같다.</p>	<p>12. “<u>1회제공량</u>”이란</p>
<p>11. “<u>영양성분표시</u>”라 <u>함은</u> 제품</p>	<p>13. “<u>영양성분표시</u>”란 제품의 일</p>

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영양강조표시”라 함은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무”·“저”·“고”·“강화”·“첨가”·“감소” 등의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무○○”·“저○○”·“고○○”·“○○함유” 등과 같은 표현으로 그 영양소의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영양소 비교 강조표시” :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덜”·“더”·“강화”·“첨가” 등과 같은 표현으로 같은 유형의 제품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영양소 기준치”라 함은 소비

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영양강조표시”란
.....
.....
.....
.....
.....
.....
.....
.....

가.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
.....
.....
.....
..... 등의 표현으로 그 영양소의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영양소 비교 강조표시” :
.....
.....
.....
..... 등의 표현으로 같은 유형의 제품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5. “영양소 기준치”란
.....

<p>자가 하루의 <u>식사중</u> 해당 <u>축산물</u>이 차지하는 <u>영양적가치</u>를 보다 잘 이해하고, <u>제품간</u>의 <u>영양소</u>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u>축산물</u>의 <u>표시</u>에서 사용하는 <u>영양소</u>의 <u>평균적인 1일섭취 기준량</u>을 말한다.</p> <p>14. “<u>주표시면</u>”이라 함은 <u>용기·포장의 표시면</u>중 <u>제품명</u> 등이 <u>인쇄</u>되어 <u>소비자</u>가 <u>축산물</u>을 <u>구매</u>할 때 <u>통상적으로</u> <u>소비자</u>에게 <u>보여</u>지는 <u>면</u>을 말한다.</p> <p>15. “<u>주원료</u>”라 함은 <u>법 제4조</u>의 <u>규정</u>에 의한 <u>축산물</u>의 <u>기준</u> 및 <u>규격</u>에서 <u>정한 성분배합 기준</u>이상의 <u>원재료</u> 또는 <u>각각의 축산물</u>의 <u>주용도</u>, <u>제품</u>의 <u>특성</u> 등을 <u>고려</u>하여 <u>다른 축산물</u>과 <u>구별</u>, <u>특징</u>있게 하기 위하여 <u>사용</u>되는 <u>원료</u>를 말한다</p> <p>16. “<u>포장육</u>”이라 함은 <u>법 제2조 제3의2호</u>에서 <u>정한 것</u>을 말한다.</p> <p>17. “<u>복합원재료</u>”라 함은 <u>그 자체</u>가 <u>2가지</u> 이상의 <u>원재료</u>로 제</p>	<p>.....<u>식사</u> <u>중</u>..... <u>영양적</u> <u>가치</u>를 <u>제품</u> <u>간</u>의 <u>영양소</u>를<u>1</u> <u>일</u> <u>섭취</u>기준량을 말한다.</p> <p>16. “<u>주표시면</u>”이란 <u>제품명</u> 등이 <u>인쇄</u>되어 있는 <u>용기·포장</u>의 <u>표시면</u>으로 <u>소비자</u>가 <u>축산물</u>을 <u>구매</u>할 때 <u>통상적으로</u> 볼 수 있는 <u>면</u>을 말한다</p> <p>17. “<u>주원료</u>”란<u>성분</u> <u>배합</u>기준 <u>이상</u>의..... </p> <p>18. “<u>포장육</u>”이란 <u>법 제2조 제4호</u>에서 <u>정한 것</u>을 말한다.</p> <p>19. “<u>복합원재료</u>”란 <u>2종류</u> 이상의 <u>원재료</u> 또는 <u>성분</u>으로 <u>제조</u>·</p>
--	---

<p><u>조·가공되어 축산물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이외의 원재료를 말한다.</u></p>	<p><u>가공한 제품으로서 축산물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u></p>
<p>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3조(표시대상) 표시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축산물가공품</p> <p>가. <u>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u></p> <p>나. <u>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물(이하 “수입축산물”이라 한다)중 축산물가공품</u></p> <p>다. < 삭제 2002. 1. 4. ></p> <p>2. 1호외의 그릇 또는 포장에 넣어진 축산물중 수입축산물</p> <p>3. <u>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만드는 포장육</u> <신 설></p> <p>4.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그릇 또는 용기에 포장한 식용란</p>	<p>1. 축산물가공품</p> <p>가. <u>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처리·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u></p> <p>나. <u>법 제15조제1항에 따른</u></p> <p>2. 1호외의 그릇 또는 포장에 넣어진 <u>축산물 중 수입축산물</u></p> <p>3. <u>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u></p> <p>4. <u>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닭·오리의 식육과 식용란 중 닭의 알(축산물의 개별기준에서 정함)</u></p> <p>5. <u>제4호에 따른 “식용란 중 닭의 알”의 개별기준에 따라 표</u></p>

<p>으로서 동고시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용란</p> <p>제4조(표시사항) <u>영업자 또는 법</u> 제1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이 고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1.2. (생 략)</p> <p>3. < 삭제 2004. 1.20 ></p> <p>4. <u>영업장의 명칭(상호)·소재지</u></p> <p>5. <u>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u></p> <p>6. <u>유통기한</u></p> <p>7. <u>내용량</u></p> <p>8. <u>원재료명 및 함량(함량은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및 주표시면에 특정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u></p> <p>9. <u>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품과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u></p>	<p>시하고자 하는 오리, 메추리의 알</p> <p>제4조(표시사항) <u>제3조에 따른 표시대상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u></p> <p>1.2. <u>현행과 같음</u></p> <p>3. <u>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u></p> <p>4. <u>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정한다)</u></p> <p>5. <u>유통기한</u></p> <p>6. <u>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영양성분표시대상 축산물에 한정하여 표시한다.</u></p> <p>7. <u>원재료명과 함량(함량은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와 주표시면에 특정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u></p> <p>8. <u>성분명(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품,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u></p>
--	--

<p>용하는 경우 및 주표시면에 특정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p> <p>10.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p> <p>11. 기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서 규정하는 사항</p> <p>제5조(표시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그릇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경우와 주표시면에 특정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함량</p> <p>9.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p> <p>10.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p> <p>제5조(표시방법) 축산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2.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 포장한 제품(이하 “내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내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을 표시할 수 있다.</p> <p>3.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이 내포장에 표시되어 있고 외부에서 내포장의 표시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p>
---	---

<p>2.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에서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p> <p>가. 주표시면 :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7호</p> <p>나. 일정장소 일괄표시 : 제4조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 단, 제5호 및 제6호는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p> <p>다. 제4조제4호, 제10호 및 제11호는 임의 장소에 표시할 수 있음</p> <p>3.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되, 다음에서 정하는 활자 크기로 하여야 한다.</p>	<p>소 판매단위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내포장의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최소판매단위에 표시하여야 한다.</p> <p>4.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주표시면, 일괄표시면(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및 기타표시면(주표시면과 일괄표시면 등을 포함한 모든 표시면을 말한다)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p>가. 표시 장소별 표시 사항 및 활자 크기</p>
---	---

가.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7호 : 12포인트 이상. 다만, 제4조제1호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4조제2호 및 제7호는 7포인트 이상

나. 일정장소에 일괄표시하여야 하는 제4조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 : 제5호 및 제6호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제8호 및 제9호는 7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150cm²이하인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활자크기는 8포인트 이상으로, 제8호의 활자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기타 제4조제4호, 제10호 및 제11호 : 제4호 및 제11호는 6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제10호는 8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150cm² 이하인 제품의 경우에는 제10호의 활자크기를 6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 (포인트)
1) 주표시면	○ 제품명	12 이상
	○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12 이상
	○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12 이상
2) 일괄표시면	○ 제조연월일	10 이상
	○ 유통기한	10 이상
	○ 원재료명과 함량	7 이상
	○ 성분명과 함량	7 이상
3) 기타표시면	○ 영업장의 명칭(상호)-소재지	6 이상
	○ 영양성분	8 이상
	○ 기타사항 표시	6 이상

나. 가목 1)의 표시사항 중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물가공품의 유형과 내용량은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가목 2)의 표시사항 중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은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라. 포장면적이 150cm²이하인 제품의 경우 활자크기는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은 8포인트 이상으로, 원재료명과 함량은 5포인트 이상으로, 영양성분은 6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신 설〉

4.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축산물과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다.

5. <삭제 2002.1.4>

〈신 설〉

6.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에 대하여 알기쉬운 장소에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티커를 이용하여 점자표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다.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내포장의 표시사항과 활자크기는 가목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 할 수 있다.

5. 표시는 용기 또는 포장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혼용하거나 함께 표시할 수 있다. <후단삭제>

6. 용기나 포장은 다른 업소의

17. >
<신 설>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로 표시할수 있다. 이 경우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제3조에 따른 표시대상 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식육 등 냉동축산물에 대하여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
2.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축산물에 대하여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3. 개봉시 상해 우려가 있는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대하여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는 “개봉시 캔 절단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p> <p>4.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p> <p>5.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러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시설 등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다만, 혼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예시) “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시</p> <p>6. 축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p>
---	--

<p><u>제6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u> 다음 각호의 축산물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통·병조립 및 병제품 등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된 라벨(Label)을 떨어</u> 	<p><u>제7조(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u> 제3조에 따른 표시대상 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해당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u> (예시)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에 “무보존료” 등의 표시 2. <u>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의 과정을 하지 아니한 원래의 축산물에 해당 영양소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소에 대한 강조표시</u> 3. <u>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u> <p><u>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u> 다음 각호의 축산물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p>
--	--

<p>어지지 않게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제6조제6호의 자구수정·이동)</p>	
<p><u>〈신 설〉</u></p>	<p>가.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나. 통·병조립 및 병제품 등의 경우 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p>
<p>2. < 삭제 2004. 1. 20. > 3. < 삭제 2005. 9. 23. > 4. 수출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5. 수입축산물의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출국</p>	<p>라. 허가(신고)권자가 변경신고를 수리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 마.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제외한 제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p>

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일자 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수출국 및 제조회사의 표시는 한글표시 스티커에 당해 제품 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을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표시 스티커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수입축산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출축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3. 수입축산물에 대한 표시방법

가.

.....

.....

.....한글 표시사항은 떨어지지 않게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

.....

.....

..... 아니 된다. 다만,

.....

.....

.....아니 된다.

나. 수출하는 국가 및 가공업체의 표시는 한글표시 스티커에 해당 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삭 제〉

<p>1) 지육</p> <p>2) <u>대포장(벌크상태의 것)</u></p> <p>3) <u>자사제품제조용원료로서 원래의 용기·포장 또는 라벨에 수출국의 제품명,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축산물. 다만, 원래의 용기·포장 또는 라벨에 제품명,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u></p> <p>4) 「<u>대외무역법 시행령</u>」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u>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u>”로 한다.</p> <p>6. <u>제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업소명 및 소재지 등 경미한 표시</u></p>	<p><u>다. 수입축산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u></p> <p>1) 지육</p> <p>2) <u>표시가 불가능한 벌크 상태의 축산물</u> (예 : 우지, 돈지)</p> <p>3) <u>자사제품제조용원료로서 원래의 용기·포장 또는 라벨에 수출국의 제품명,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아이스크림류에 한정한다)이 표시된 축산물(단서삭제)</u></p> <p>4) 「<u>대외무역법 시행령</u>」 제26조에 따른 <u>외화획득용으로</u></p>
--	--

<p>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스티커 또는 라벨(Label)을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한다. < 신설 2007. 12. 17. ></p>	<p>수입하는 축산물. 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p>
<p>제7조(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은 별표1과 같다.</p>	<p><삭 제> (제8조제1호.마로 이동)</p>
<p>제8조(중량 등의 허용오차) 제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량 또는 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그 용기·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는 별표 2와 같다.</p>	<p>제9조(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은 별표1과 같다</p>
	<p>제10조(중량 등의 허용오차) 제4조제6호에 따른 중량 또는 용량을 표시하는 경우와 [별표1] 2.가,나 의 개별기준에 따라 표시하는 식용란과 식육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는 별표 2와 같다.</p>

<p>[별표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제7조관련)</p> <p>1. 축산물의 일반기준</p> <p>가. 축산물가공품(포장육 및 수입 축산물을 포함한다)</p> <p>(1)제품명</p> <p>(가)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관청(수입축산물의 경우는 신고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p>	<p>부 칙(2010. 9.)</p> <p>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2호 가목의 신설 규정에 따른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에 표시는 2011.4.1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항 식용란 난각에 표시는 2012.1.1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축산물의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처리·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한 표시 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2011년 11월 0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p> <p>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1월 0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p> <p>[별표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제</p>
--	--

<p>하여야 한다.</p> <p>(나) 제품명은 상호·로고 또는 상표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나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및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거나 다른 유형의 축산물가공품 또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다)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p> <p>1) < 삭제 2002.01.04 ></p> <p>2) < 삭제 2002.01.04 ></p> <p>([별표1] 1.가.(1)(다)4) 자구수정·이동)</p>	<p>9조관련)</p> <p>1. 축산물의 일반기준</p> <p><삭 제></p> <p>가. 제품명</p> <p>1) 보고 또는 신고한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p> <p>2) 제품명은 상호·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후단삭제></p> <p>3)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p>
---	---

<p>3) <u>식육·원유·알·생선·해물 등 여러 원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2가지 이상(예: 식육의 경우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의 원료 합계량이 생물을 기준으로 하여 1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한다.</u></p>	<p>다음의 구분에 따른다</p> <p>가) <u>제품의 처리·제조·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백분율 또는 중량·용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이상의 활자로 표시할 수 있다</u></p> <p>나) <u>식육·원유·알·생선·해물·과실·채소등 여러 원재료를</u></p> <p>.....</p> <p>.....</p>
--	---

<p>4) <u>제품의 제조·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합성착향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00향첨가(함유)” 또는 “합성착향료 첨가(함유)”의 표시</u></p>	<p>..... <u>원재료</u></p> <p>다) <u>“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합성착향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00향첨가(함유)” 또는 “합성착향료첨가(함유)”등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u></p> <p>예) 딸기향우유(합성딸기향첨가)</p>
--	--

<p>를 하여야 한다.</p> <p>예) 딸기향우유(합성딸기향 첨가)</p> <p>5) < 삭제 2007. 12. 17. ></p> <p>6) < 삭제 2007. 12. 17. ></p> <p>(라) <u>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은 식육제품·식육가공품, 유제품·유가공품 또는 알제품·알가공품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별도로 정하여진 축산물가공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마) <u>수입축산물중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함에 있어 외국어의 제품명을 한글로 번역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글로 번역한 제품명은 (가) 내지 (라)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어</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	---

의 제품명과 병기하여
야 한다.

<신 설>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가) (생 략)

(나) 포장육, 양념육류(육지
물) 및 수입하는 식육
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
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때 법 시행규칙 제
51조제2항[별표13]3.가
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4) 수입축산물중 제품명을 한글
로 표시할 때는
.....
.....
..... 1)에서 3)까지의
.....
.....
..... 함께 표시
하여야 한다.

5) 제품명에는 다음의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소비자를 오도·혼동시
키는 표현

나) 다른 유형의 축산물가
공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이 경우
「식품위생법」,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한다.

다)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
시·광고에 해당하는

고시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별 명칭을 정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 등 부위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도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사용한 때에는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표현

나.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1) (현행과 같음)

2) 포장육, 양념육류(육지물) 및 수입식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신 설〉

(3) < 삭제 2004. 1. 20 >

(4) 영업장의 명칭(상호)·소재지

〈신 설〉

(가)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소의 경우에는 영업의 허가시 허가관청에 제출한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를 표시함에 있어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나) 축산물수입판매업의 경

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 방법”에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이 정해진 경우 이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나) 2이상의 부위가 포함되어 부위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도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다) 가),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때에는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1) 업종별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p>우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함께 당해 영업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축산물가공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상호)을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당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수입축산물의 경우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와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19. ></p> <p><신 설></p>	<p>가공업 : 영업 허가 시 <후단삭제></p> <p>나) 축산물수입판매업 : 수출국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해당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업 영업장의 명칭(상호)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영업 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영업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수</p>
---	---

<p>(라) (가) 및 (나)의 규정이외의 판매업소 등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 및 (나)에서 표시한 영업장 명칭(상호)의 표시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p> <p>(5)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한다) 제조일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과 아이스크림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제조일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별표1] 1.가.(5)(마)4)의 이동)</p> <p>(가) 제조일의 표시는 “○○년○○월○○일”, “○○.</p>	<p>입축산물의 경우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장의 명칭(상호) 과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p> <p>2) 1)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p> <p>3) 그 밖에 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 영업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의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하여야 한다.</p> <p>라.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한다)</p> <p>〈삭 제〉</p> <p>1) 표시대상 축산물 : 아이스크림류</p>
--	---

<p>○○.○○”, “○○○○년 ○○월○○일” 또는 “○ ○○○.○○.○○.”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제조일을 주표시 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 우에는 당해 위치에 제 조일의 표시위치를 명 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축산물에 있 어서 단순히 수출국의 년, 월, 일의 표시순서 가 전단의 표시순서와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년, 월, 일의 표시순서를 예 시하여야 한다.</p> <p>(나) 통조림제품에 있어서 연 도의 표시는 끝 숫자만 을, 10월·11월·12월의 월 표시는 각각 O.N.D 로, 1일 내지 9일의 표 시는 그 숫자의 앞에 ○을 표시할 수 있다.</p> <p>([별표1] 1.가.(5)(가)의 후단) 이동)</p>	<p>2) 표시방법</p> <p>가) 제조일은 포장이 완료된 시점에서 표시하여야 한 다. 다만, 포장 후 멸균 또는 살균 등의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정 을 거친 후 표시할 수 있다.</p> <p>나) 제조일의 표시는 “○○년 ○○월○○일”, “○○.○ ○.○○”, “○○○○년○ ○월○○일”, “○○○○. ○○.○○.” 또는 “○○ 년○○월”, “○○.○○.”, “○○○○년○○월”, “○ ○○○.○○” 등의 방법으 로 주표시면 또는 일괄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 고,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제조일의 표 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 다. <후단삭제></p>
---	--

<p>(다) 제품의 처리가공과 포장 과정이 자동화설비로 일괄처리되어 제조시간까지 자동표시 할 수 있고, 제품의 유통기한이 3개월이내인 경우에는 “○○월○○일”, “○○.○○”, “○○월○○일○○시” 또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라)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u>〈신 설〉</u></p>	<p><u>〈삭 제〉</u></p> <p>다) <u>수입되는 축산물에 표시된 수출국의 년,월,일의 표시순서가 나)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년,월,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한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	---

(마) 제조연월일의 표시는 축산물의 포장이 완료된 때 즉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시점에 표시할 수 있다.

(바) 아이스크림류는 제조 “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다.

(6) 유통기한

(가) 축산물은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유통기한을 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이스크림류 등은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1) 유통기한의 표시는 “○ ○년 ○○월 ○○일까지”, “○○.○○.○○까지”, “○○○○년 ○○월 ○○일까지” 또는 “○○○○.○○.○○.까

3) 제조일 표시대상이 아닌 축산물에 제조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된 제조일을 지우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조일 표시는 “년월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마. 유통기한

1) 표시대상 축산물 :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축산물. 다만, 아이스크림류는 유통

<p>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유통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부위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축산물에 있어서 단순히 수출국의 년, 월, 일의 표시순서가 전단의 표시순서와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년, 월, 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한다.</p> <p>([별표1] 1.가.(6)(가)1) 후단 자구수정·이동)</p> <p>2) 제조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부터 ○○일까지”, “제조일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p>	<p>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p> <p>2) 표시방법</p> <p>가) ……………</p> <p>……………</p> <p>……………</p> <p>……………</p> <p>……………</p> <p>……………</p> <p>…………… 표시하여야 한다.</p> <p>〈후단삭제〉</p>
---	--

<p>일부터 “○○년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p> <p>3) <u>제품의 처리·가공과 포장과정이 자동화 설비로 일괄처리되어 제조시간까지 자동표시할 수 있고 제품의 유통기한이 3개월이내인 경우에는 “○○월○○일까지”, “○○.○○까지”, “○○월○○일○○시까지” 또는 “○○.○○.○○:○○까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u></p> <p>([별표1] 1.가.(6)(가)1 후단 자구수정·이동)</p>	<p>나) <u>유통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u></p> <p>다) <u>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u> </p> <p>라) <u>제품의 유통기한이 3월이내이고, 자동화 설비로 인하여 제조시간까지 자동표시 되는 경우에는 유통기한의 “년”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u></p> <p>마) <u>수입되는 축산물에 있어서 수출국의 년, 월, 일</u></p>
--	--

(나) 유통기한의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유통하여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을 표시하여야 하고, 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냉동 또는 냉장온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생략)

(7)내용량

(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갯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일 경우 중량으로, 액체일 경우에는 용량으로,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직접 마시지 아니하는 액체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고, 갯수로 표시하는 경

의 표시순서가 가)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년, 월, 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유통기한의 유지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 경우 유통기한과 함께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유통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냉동보관」 및 냉동온도 또는 「냉장보관」 및 냉장온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바. 내용량

1).....
.....개수로

<p>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p> <p>1) <u>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주원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기할 수 있다</u></p> <p>2) <u>총 중량비율이 2%미만인 원재료는 함량순서에 관계없이 표시할 수 있다.</u></p> <p>3) <u>주표시면이 30cm²이하인 제품은 정제수를 제외 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u></p> <p>4) <u>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 뒤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u></p>	<p><u>과 함량</u></p> <p>1) <u>표시방법</u></p> <p>가) <u>축산물가공품의 처리·제조·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은(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미만인 경우에는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u></p> <p>나) <u>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주원료의 원재료명은 우선 표시할 수 있다.</u></p> <p><u>〈삭 제〉 ([별표1] 1.사.1)가)후단으로 이동)</u></p> <p>다)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표시할 수 있다</p>
--	--

총 중량비율이 10%미만인 당절임과일	‘당절임과일’
총 중량비율이 2%미만인 곡류, 두류, 서류, 채소류, 과실류, 견과류, 유지식물류, 향신식품, 버섯류, 감미식품, 기호식품류, 야생식물류, 조류, 식육류, 어류, 우유류, 패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 또는 척색류, 알류 또는 어란류	‘곡류’, ‘두류’, ‘서류’, ‘채소류’, ‘과실류’, ‘견과류’, ‘유지식물류’, ‘향신식품’, ‘버섯류’, ‘감미식품’, ‘기호식품류’, ‘야생식물류’, ‘조류’, ‘식육류’, ‘어류’, ‘우유류’, ‘패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 또는 척색류’, ‘알류’ 또는 ‘어란류’

〈신 설〉

〈신 설〉

〈신 설〉

- 나) 식용유지는 “식용유지명” 또는 “동물성 유지, 식물성 유지(올리브유 제외)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소첨가로 경화한 식용유지에 대하여는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예시:식물성유지(부분경화유) 또는 대두부분경화유 등]
- 다) 전분은 “전분명(000전분)” 또는 “전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라) 총 중량비율이 10%미만인 당절임과일은 “당절임과일”로 표시할 수 있다.
- 마) 식품공전 제1. 3. 식품원재료 분류 1), 2)[(12)기타 제외]에 해당하는 원재료 중 개별 원재료의 중량비율이 2%미만인 경우에는 분류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바)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

〈신 설〉

(가)의2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함유된 양과 상관없이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원재료란에 그 명칭을 표시하여야

는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사) 해당 제품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축산물의 원재료에서 이행(carry-over)된 식품첨가물이 당해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함유된 경우에는 그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첨가물 중 천연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착향료” 또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합성착향료와 그 향의 명칭”으로 표시[예시 : 합성착향료(○○향)]할 수 있다.

3) 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함유된 양과 상관없이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

하며, 이들로부터 유래된 성분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명칭 뒤에 괄호를 하고 그 명칭을 표시하거나, 원재료란의 마지막에 일괄정리하여 함유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재료란에 "우유"는 "원유" · "버터" · "치즈" 또는 "분유"로 표시한 경우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께 그 함량(백분율 또는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 (1)제품명의 규정에 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가) 표시대상

(1) 알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2) (1)유래 성분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나) 표시방법

(1) 가)(1)의 경우에는 원재료명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가)(2)의 경우에는 원재료명 표시란에 원재료명 뒤에 괄호를 하고 그 명칭을 표시하거나 원재료명 표시란 마지막에 일괄정리하여 함유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원유" · "버터" · "치즈" 또는 "분유"를 원재료

<p>하여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p> <p>2) 원재료명 표시란을 제외하고 주표시면에서 특정 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p> <p>(다)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축산물가공품에 있어서는 그 함유된 식품첨가물의 명칭·용도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예-보존료 사용이 금지된 제품에 ‘무보존료’ 표시 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라)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서 사용한 가용성 성분(또는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품</p>	<p>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를 하여 “우유”표시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p> <p>〈삭 제〉</p> <p>〈삭 제〉</p> <p>4) 주표시면에 특정 원재료명과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함량을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한다.</p> <p>〈삭 제〉 ([별표1] 1.사..2)바로 이동)</p>
---	---

중에 함유하는 각각의 원재료 고형분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9) 성분명 및 함량

제품에 직접 첨가하지 아니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칭과 실제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성분명을 영양소 강조표시에 준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양소 강조표시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0) 영양성분등

(가) 표시대상축산물

- 1) 유가공품중 조제유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5) 축산물의 원재료로서 사용한 가용성 성분(또는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제품 중에 함유된 각각의 원재료 고형분의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삭 제>

6) 성분명을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과 실제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을 백분율 또는 중량(용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성분명을 영양소 강조표시에 따라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양소 강조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p>2) <u>식육가공품중 소시지류</u> 3),4) (생략)</p> <p>(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p> <p>1) <u>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제품의 제조·가공시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u></p> <p>2) <u>주표시면이 30cm²이하인 제품</u></p> <p>(다) <u>표시대상성분 (생략)</u></p> <p>(라) <u>표시단위</u></p> <p>1) <u>영양성분의 함량기준은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에서 100그램(g)당, 100밀리리터(ml)당 또는 그 포장에 소비자가 1회에 섭취하는 양인 경우에는 1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용기·포장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횟수를 표시하는 경우 1회제공량당 함유된 값</u></p>	<p><u>아. 영양성분등</u></p> <p>1) <u>표시대상축산물(다른 제품의 처리·제조·가공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주표시면이 30cm²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u></p> <p>가) <u>유가공품 중 조제유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자연치즈, 가공치즈</u></p> <p>나) <u>식육가공품 중 소시지류</u> 다),라)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2) <u>표시대상성분 (현행과 같음)</u></p> <p>3) <u>표시단위 및 1회 제공량 산출 기준</u></p> <p>가) <u>영양성분 함량은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u></p>
---	---

<p>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2) 영양성분의 함량기준을 산출함에 있어 제품의 특성상 품질유지를 위하여 액체에 담긴 것으로서 통상 그 액체를 섭취하지 아니 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그 액체를 제외하고 실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p> <p>3) 1회 제공량은 [표 3]에 서 정한 해당 제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200%) 미만에서 해당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내용량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1회 제공량을 산출할 수 있다.</p> <p>가) 제품의 내용량이 해당 제품 1회 제공기</p>	<p>100밀리리터(ml)당 또는 1 포장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영양성분 함량 단위는 [표 2]영양소 기준치의 영양소 단위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을 함께 표시하는 때에는 그 단위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영양성분 함량은 축산물 중 가식부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가식부위는 동물의 뼈, 식물의 씨앗 및 제품의 특성상 품질유지를 위하여 첨가되는 액체 등으로 통상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 부위는 제외하고 실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한다.</p> <p>다) 2회 제공량 이상인 제품의 경우에는 총 제공횟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 횟수가 3회 이상 5회 미만은 그 값에 가까운</p>
--	---

기준량의 3분의 2 (67%) 미만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제품을 1회 제공량으로 한다. 이 경우 1회 제공량에 해당되는 제품수는 2개 이상 제품의 총 내용량이 1회 제공량에 가장 가까운 값이 되도록 정한다.

나) 제품의 내용량이 해당 제품의 1회 제공 기준량의 2배(2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내용량을 2회 제공량 이상으로 하되, 총 제공량은 총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나눈 값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정한다. 다만, 2회 제공량 이상인 제품이 통상적으로 1인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개별 포장된 경우에는 1

0.5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외에는 그 값에 가까운 정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때는 반올림한 값에는 “약”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예시 : 총 약 3.5회 제공량, 약 4회 제공량)

〈삭 제〉

〈삭 제〉

회 제공량으로 할 수 있다

다) 1회 제공기준량이 섭취 기준에 따른 사용량으로 설정된 제품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섭취 방법에 1회 섭취량을 표시하고 그 양을 1회 제공량으로 한다. <삭 제>

< 신설 2007. 12. 17. >

<신 설>

<삭 제>

라)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표 3] 축산물가공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신 설〉

〈신 설〉

(마) 표시방법

1) 공통사항

가) (생 략)

나) 영양소의 함량이 “0”인 경우에는 그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양강조표시 및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

2(67%)이상 2배(200%)미만의 범위(이하 “제공량 범위 “라 한다.)에서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이하 “단위“라 한다)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그 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1) 단위 내용량이 1회 제공량 범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단위 이상을 1회 제공량으로 하되, 1회 제공기준량에 가장 가까운 값이 되도록 단위의 수를 정한다.

(2) 단위 내용량이 1회 제공량 범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량을 2회 제공량 이상으로 하되, 총 제공량은 1회 제공기준량으로 나눈 값에 가까운 값으로 정한다.

<p>에 따라 “0”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그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을 “0”으로 표시하여야 한다.</p> <p>다) (생략)</p> <p>라) 영양성분 표시는 [도 1]의 영양표시서식 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의 표시를 병기할 수 있다.</p> <p>2)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 가),나),다),라),마),바)사) (생략)</p> <p>(바) 영양강조 표시기준</p> <p>1) “저”, “무”, “고(또는 풍부)” 또는 “함유(또는 급원)”용어사용</p> <p>가) 일반기준</p> <p>① “무” 또는 “저”의 강조표시는 나)의 규정에 의한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제</p>	<p>4) 표시방법</p> <p>가) 공통사항</p> <p>(1) (현행과 같음)</p> <p>(2) 영양소 함량이 없는 경우(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에 따라 “0”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영양소 함량을 “없음”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4)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도 1]영양성분 표시서식 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영양성분별 세부표시기준 (1),(2),(3),(4),(5),(6),(7) (현행과 같음)</p>
--	--

<p>조·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조·가공을 하지 아니 하여도 나)의 규정에 의한 “무” 또는 “저”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제품도 “무” 또는 “저”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표시를 하여야 “무” 또는 “저”</p> <p>② < 삭제 2007. 12. 17. ></p> <p>③ < 삭제 2007. 12. 17. ></p> <p>나)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 (생략)</p> <p>2)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강화”, “첨가” 용어 사용 가), 나), 다) (생략)</p> <p>(사)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p>	<p>5) 영양강조 표시기준</p> <p>가) “저”, “무”, “고(또는 풍부)” 또는 “함유(또는 함유)”용어사용</p> <p>(1) 일반기준 : “저” 또는 “무”의 강조표시는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2)에 따른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1),2),3),4) (생략)</p> <p>(11) 기타표시사항 (가) < 삭제 2002. 1. 4 > <u><신설></u> <u><신설></u> <u><신설></u> (나) <u>조사처리 축산물의 경우에는 조사처리업소명, 전화번호, 조사년월일, 조사선량, 조사처리된 축산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조사도안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처리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 표시란에 “조사처리된 ○○○”</u></p>	<p>(2)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 (현행과 같음) 나)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강화”, “첨가” 용어 사용 (1),(2),(3) (현행과 같음) 6)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가),나),다),라) (현행과 같음) <u>자. 기타표시사항</u> 1) <u>방사선조사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u> 가) <u>표시대상</u> (1) <u>방사선조사처리된 축산물</u> (2) <u>방사선조사처리된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처리·제조·가공한 축산물</u> 나) <u>표시방법</u> (1) <u>활자크기 및 장소 : 6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기타표시면에 표</u></p>
--	---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냉동상태로 판매되는 식육,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의 경우에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후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우유류 등 개봉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축산물가공품은 “개봉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시하여야 한다.

(2) 표시사항

(가) 조사처리업소명, 전화번호, 조사년월일, 조사선량, 조사처리된 축산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아래의 조사도안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조사처리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성분명 표시란에 “조사처리된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의 1호로 이동)

<p>(마) <u>병·통조림축산물가공품</u>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생략)</p> <p>2) <u>성분명 표시란에 내용물의 고형량·내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u></p> <p>3) <u>개봉시 상해우려가 있는 “원터치캔”통조림은 “개봉시 캔 절단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는 내용의 주의안내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4) (생략)</p> <p>(바) <u>레토르트축산물가공품은 “레토르트가공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u></p> <p>(사) (생략)</p> <p>(아) <u>“천연”의 표시는 인공(조합)향·합성착색료·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내에</u></p>	<p><u>〈삭 제〉 (제6조의 2호로 이동)</u></p> <p>2) <u>병·통조림축산물가공품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u></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내용물은 고형량 및 내용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성분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한다.</u></p> <p><u>〈삭 제〉 (제6조의 3호로 이동)</u></p>
---	---

<p>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u>물리적공정</u> <u>이외의</u>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제품에 <u>한하여</u> 표시할 수 있다.</p> <p>(자) (생략)</p> <p>(차) < 삭제 2006. 12. 21.></p> <p>(카) < 삭제 2006. 12. 21.></p> <p>(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관련 [별표 12]제4호 바목 및 시행규칙 제51조제2항관련 [별표13]제3호 카목의 <u>규정에 의하여</u>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고 당해 제품의 냉동전환일, 냉동제품에 해당하는 유통기한과 보관온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때 기존의 표시사항을 가리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p> <p>(파) 축산물에 사용되는 그릇</p>	<p><u>다)</u> (현행과 같음)</p> <p>4) 레토르트축산물가공품은 “레토르트가공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p> <p>5) (현행과 같음)</p> <p>6)</p> <p>.....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u>제품 내에</u></p> <p>..... 물리적 공정 <u>이외의</u>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u>제품에만</u> 표시할 수 있다.</p> <p>7) 현행과 같음</p> <p>8)</p> <p>.....에 <u>따라</u></p>
--	--

〈신 설〉

〈신 설〉

〈삭 제〉 (제7조의 3호로 이동)

10) 축산물이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단서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분유통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축산물은

<p>나. 식용란</p> <p>[별표 1] 2. 축산물별 개별기준</p>	<p>카페인 함량이 ml당 0.15 mg이상 함유한 경우에 주 표시면에 “고카페인함유”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2)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삭 제〉</p> <p>〈삭 제〉 (표로 신설함)</p>
--	---

2. 축산물별 개별기준

축산물의 유형	개 별 표 시 기 준
가. 식용란	<p>1) 표시대상 :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식용란 중 닭의 알(이하 “계란”이라 한다)</p> <p>2) 표시사항</p> <p>가) 식용란유통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포장하는 때에는 최소포장단위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생산자 또는 식용란유통판매업의 영업자는 계란의 난각에 산란일과 생산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p> <p>3) 표시방법</p>

축산물의 유형	개 별 표 시 기 준
	<p>가) 최소포장단위에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난각에는 법 제5조에 따라 정하여진 검인용·인쇄용 색소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다)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난각의 활자크기는 6포인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1) 제품명, 내용량 : 12포인트 이상</p> <p>(2) 산란일, 유통기한 : 10포인트 이상</p> <p>(3)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기타표시사항 : 6포인트 이상</p> <p>라)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또는 라벨(Label)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p> <p>(1)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p> <p>(2)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p> <p>(3) 유통기한을 제외한 제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신고 관청에서 승인한 경우</p> <p>4) 2)에 따른 세부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p>

축산물의 유형	개 별 표 시 기 준
	<p>가) 산란일은 “○○년○○월○○일”, “○○.○○.○○”, “○○○○년○○월○○일”, “○○○○.○○.○○.”, 또는 “○○월○○일”, “○○.○○.”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유통기한</p> <p>(1) 유통기한은 “○○년○○월○○일까지”, “○○.○○.○○까지”, “○○○○년○○월○○일까지” “○○○○.○○.○○까지.”, 또는 “○○월○○일까지” “○○.○○까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p> <p>(2)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위치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p> <p>(3) 산란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산란일로부터○○일까지” 또는 “산란일로부터 ○○월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p> <p>다)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p> <p>(1) 생산자명은 생산농장의 소유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명 대신 생산농장명을 표시할 수 있다.</p> <p>(2) 판매자명 및 소재지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식용란유통판매업의 영업장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p> <p>(3) 계란 생산자와 식용란유통판매업의 영업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생산자명을 생략할</p>

축산물의 유형	개 별 표 시 기 준
	<p>수 있다.</p> <p>라) 제품명</p> <p>(1)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호·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2) 계란에 함유된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또는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p> <p>(3) 제품명에는 다음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가)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p> <p>(나)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p> <p>마) 내용량은 개수로 표시하고 중량을 괄호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p> <p>바) 기타표시사항</p> <p>(1) 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보존방법 및 보존온도를 표시하여야 한다.</p> <p>(2) “구입 후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p>
나. 닭·오리의 식육	<p>1) 표시대상 :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닭·오리의 식육</p> <p>2) 표시사항 : 도축업의 영업자가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하는 때에는 합격표시,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생산연월일, 유통기한, 보존방법, 내용량</p>

축산물의 유형	개 별 표 시 기 준
	<p>을 표시하여야 한다.</p> <p>3) 표시방법</p> <p>가) 표시는 포장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는 다음과 같다.</p> <p>(1) 합격표시 : [도2]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p> <p>(2)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6포인트 이상</p> <p>(3) 생산연월일, 유통기한, 보존방법 : 10포인트 이상</p> <p>(4) 내용량 : 12포인트 이상</p> <p>다)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또는 라벨(Label)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p> <p>(1)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p> <p>(2)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p> <p>(3) 생산연월일, 유통기한을 제외한 제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p> <p>4) 2)에 따른 세부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p> <p>가) 합격표시는 [도 2]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축산물의 유형	개 별 표 시 기 준
	<p>나)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영업의 허가 시 허가관청에 제출한 도축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p> <p>다) 생산연월일(이하 “생산일”로 표시한다)</p> <p>(1) 생산일은 도축하는 날로 하며, 표시는 포장 완료된 시점에서 표시하여야 한다.</p> <p>(2) 생산일의 표시는 “○○년○○월○○일”, “○○.○○.○○”, “○○○○년○○월○○일”, “○○○○.○○.○○.”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p> <p>(3) 생산일을 표시하는 위치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생산일의 표시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p> <p>라) 유통기한</p> <p>(1) 유통기한은 “○○년○○월○○일까지”, “○○.○○.○○까지”, “○○○○년○○월○○일까지” “○○○○.○○.○○까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p> <p>(2)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위치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p> <p>(3) 생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산일로부터○○일까지” 또는 “생산일로부터 ○○월까지”, “생산일로부터 ○○년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p>

축산물의 유형	개 별 표 시 기 준
	<p>마) 보존방법 : 냉장제품에는 「냉장보관」 및 냉 장온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냉동제품에는 「냉동보관」 및 냉동온도를 표시하여야 한다.</p> <p>바) 내용량은 마리수로 표시하고 중량을 괄호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1마 리인 경우에는 중량만을 표시할 수 있다.</p> <p>사) 그 밖에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1]1.축산물의 일반기준을 준용·표시하여야 한다.</p>
다.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p>1) 비가열 식육가공품은 “비가열제품”으로 표시하 여야 하며, 조리 또는 가열처리를 요하는 제품은 조리 또는 가열처리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p> <p>2) 햄을 제외한 식육가공품은 햄의 명칭 또는 이 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3) 특정부위를 사용하는 제품은 원료식육 명칭뒤 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그 부위명을 표시하 여야 한다.</p> <p>4)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 하고자 할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대로 주표시 면에 표시하여야 한다.</p> <p>가)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p>

축산물의 유형	개 별 표 시 기 준
	<p>나) 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이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각각의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p> <p>5) 식육가공품에는 원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6) 식육추출가공품은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가) 가열처리방법 등에 따라 “<u>멸균제품</u>”, “<u>살균제품</u>” 또는 “<u>비살균제품</u>”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특수용도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강과 관련된 일체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다) 각각의 원재료로 사용된 가용성 성분(또는 추출물)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p> <p>7) 소시지류의 충전에 사용된 케이싱의 명칭은 원재료명 표시란의 마지막에 표시할 수 있으며, 비가식 케이싱을 사용한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가식 케이싱의 사용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p> <p>8) 통조림제품에 있어서 연도의 표시는 끝 숫자</p>

축산물의 유형	개 별 표 시 기 준
	<p>만을, 10월·11월·12월의 월 표시는 각각 O.N.D로, 1일 내지 9일의 표시는 그 숫자의 앞에 ○을 표시할 수 있다.</p> <p>9)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육의 경우에는 당해 도체가 도축된 도축장의 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두 곳 이상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이 서로 혼재된 경우에는 도축된 도축장 모두를 각각 표시하며, 도축장명의 표시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이외에 스티커로도 할 수 있다.</p> <p>10) 국내산 쇠고기(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별표 13]3.가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서 정한 등급 의무표시 부위에 한한다)를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육의 경우에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표시 의무부위와 비의무부위가 서로 혼재되고 동고시[별표1]1.나.2)나)에 따라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포함되어 부위명 대신 용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등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p>
라. 유가공품	<p>1) 강화우유는 강화한 성분명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1리터당 비타민A는 2,000IU, 비타민D는 400IU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강화우유로 표시할 수 있다.</p> <p>2) 유산균첨가제품의 경우에는 특정균의 함유사</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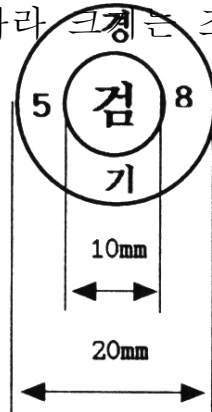
축산물의 유형	개 별 표 시 기 준
	<p>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균의 함유 균수를 표시하여야 한다.</p> <p>3) 가열처리방법 등에 따라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살균온도 또는 멸균온도 및 시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저온장시간살균 또는 고온단시간살균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스퇴라이제이션”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4) 우유류 중 유지방을 감하여 표준화한 경우에는 “표준화제품”, “표준화우유” 또는 “스텐다디제이션” 등을 표시하고 유지방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p> <p>5) 저지방우유류는 유지방분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유지방분의 함량이 0.5퍼센트이하일 경우에는 “탈지우유”·“탈지강화우유“ 또는 ”환원탈지유“로 표시할 수 있다.</p> <p>6) 저지방가공유중 유지방분이 0.5퍼센트이하인 제품은 탈지가공유로 표시할 수 있다.</p> <p>7) 발효후 가열처리된 제품에는 “발효후 가열처리 제품”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8) 멸균된 농축우유 또는 탈지농축우유는 각각 “무가당연유” 또는 “무가당탈지연유”로 표시할 수 있다.</p> <p>9) 발효유류, 자연치즈, 유청류, 조제분유의 경우 특정성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축산물의 유형	개 별 표 시 기 준
	<p>10) 농축유류 중 가당제품은 사용한 당류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p> <p>11) 유크림류는 조지방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p> <p>12) 혼합분유는 조제분유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3) 유단백가수식품의 경우 조단백질·아미노산성 질소의 함유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p> <p>14) 조제분유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가) 조제분유는 조산아 또는 미숙아용은 각각 “조산아용” 또는 “미숙아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영·유아에 먹이는 방법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 때 조제분유 등 분말상의 조제유류의 경우 “조유 후 바로 수유하시고 남은양은 재수유하지 말고 버리십시오.”라는 내용의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나) 100킬로칼로리(kcal)당 철 1밀리그램이상 함유된 제품은 “철강화조제유”라고 표시할 수 있다.</p> <p>다) 조제분유 및 조제우유는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p> <p>라) 조제유류의 영양성분표시는 영유아에게 먹이는 방법에 따라서 조유했을 때의 100ml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별표1]1.가.(10)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에 있어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p>

축산물의 유형	개 별 표 시 기 준
	<p>마) 기타조제분유 및 기타조제우유는 아래의 영양소에 대하여 영양성분표시를 하여야 한다.</p> <p>(1) 조단백질, 조지방,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B₁, 비타민B₂, 니코틴산, 비타민 B₆, 엽산, 판토텐산, 비타민 B₁₂, 비타민 K₁, 비타민 E, 나트륨, 칼륨, 염소,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요오드, 구리, 아연, 망간.</p> <p>15) 아이스크림·아이스밀크, 아이스크림믹스·아이스밀크믹스는 유지방분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저지방아이스크림과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는 지방분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p> <p>16) 아이스크림류에는 보존조건과 보존온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실중량을 부피로 표시할 수 있다.</p> <p>17) 아이스크림분말류에는 제품단위중량당 가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권장가수량은 제품중량의 2배임)</p>
<p>마. 알가공품</p>	<p>1) 살균여부에 따라 “멸균제품”, “살균제품”, 또는 “비살균제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2) 알가공품 중 비살균제품 중 냉장제품은 제조연월일 00월00일00시, 00.00.00:00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유통기한의 표시는 00월00일 00시까지, 00.00.00:00까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신설).</p>

닭·오리의 합격 표시식육의 합격표시(제23조관련)

1. 제품의 포장에 다음의 규격에 의한 합격표시를 한다. 다만, 포장지의 종류에 따라 크기는 조절할 수 있다.



2. 검인의 부호·번호 및 규격은 다음에 따른다.

가. 시·도별 검인 부호

시·도	부 호	시·도	부 호
서울특별시	서 울	강 원 도	강 원
부산광역시	부 산	충청북도	충 북
대구광역시	대 구	충청남도	충 남
인천광역시	인 천	전라북도	전 북
광주광역시	광 주	전라남도	전 남
대전광역시	대 전	경상북도	경 북
울산광역시	울 산	경상남도	경 남
경 기 도	경 기	제주특별자치 도	제 주

나. 도축장별 검인번호는 시·도지사가 부여한 두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다.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한 식육의 합격표시에 사용하는 검인의 부호·번호 및 규격에 대하여는 검역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